행정안전부

회복과 성장의 마중물

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



추진배경

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소비 활성화,
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

총 예산 13.9조원

지원대상 및 규모

대상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※ 지급기준일('25.6.18.)

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, 기초생활수급자 두텁게 지원

▶ 지원대상 해당여부, 지급 금액 등은 '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*' 통해 개별 통보

* 국민비서 홈페이지(https://ips.go.kr) 및 네이버앱(전자문서), 카카오톡(국민비서 채널), 토스(공공알림) 등에서 사전 신청

규모 1인당 15~ 55만원

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

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**15만원**(차상위 30만원, 기초 40만원) 우선 지급

※ 비수도권지역(서울·인천·경기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)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

※ 농어촌 인구감소지역(84개 시·군)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

2차 국민의 90%(건보료 등으로 확정)에게 **1인당 10만원** 추가 지급

구분	지원금액			
	상위 10%	일반국민	차상위·한부모가족	기초수급자
1차 선지급 (비수도권지역/ 농어촌 인구감소지역)	15만원 (+3만원/+5만원)	15만원 (+3만원/+5만원)	30만원 (+3만원/+5만원)	40만원 (+3만원/+5만원)
2차 추가지급	-	+10만원		
합계	15만원 (18만원/20만원)	25만원 (28만원/30만원)	40만원 (43만원/45만원)	50만원 (53만원/55만원)

행정안전부

회복과 성장의 마중물

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



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

신청주체 개인별 신청

※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·수령,
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'미성년 세대주'는 직접 신청

신청지역 기준일('25.6.18.)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(특·광역시, 시·군·구)

신청·지급기간

- 1차 '25.7.21.(월) ~ '25.9.12.(금)까지 신청·지급
- 2차 '25.9.22.(월) ~ '25.10.31.(금)까지 신청·지급

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(카드·모바일·지류형), 신용·체크카드, 선불카드 중 선택

신청·지급방식

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? '25.7.21.(월) 9:00 ~ '25.9.12.(금) 18:00, 기간 중 24시간 가능

- 지역사랑상품권 (모바일·카드형) ----------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
- 신용·체크카드 ---------- 카드사 홈페이지·앱·콜센터·ARS

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? '25.7.21.(월) 9:00 ~ '25.9.12.(금) 18:00, 주말 제외

- 지역사랑상품권 (지류형·일부 카드형), 선불카드 ----------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- 신용·체크카드 ----------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(~16:00)

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지자체별 추후 안내

고령자·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'찾아가는 신청' 요청(유선)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

한눈에 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·지급 절차



행정안전부

회복과 성장의 마중물

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



사용기한 1·2차분 모두 '25.11.30.(일)까지 사용

※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

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

- 주소지가 '특별시·광역시' 지역인 경우 → 특별시·광역시
- 주소지가 '도' 지역인 경우 →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·군

※ 사용기간 중 이사(+전입신고 완료)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(신용·체크카드 한정)

사용처

지역사랑상품권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(지자체별 사용처 상이)

※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,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
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: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

사용가능 업종

- 전통시장, 동네마트
- 식당
- 의류점
- 미용실
- 안경점
- 교습소·학원
- 약국·의원
- 프랜차이즈 가맹점 (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)

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확인하세요!



* 하나로마트의 경우,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
사용불가 업종

-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(SSM)
- 백화점
- 면세점
- 대형 외국계 매장(샤X, 애X, 이X아 등)
- 대형전자제품판매점(하이XX, 전자XX 등)
- 프랜차이즈 직영점(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)
- 온라인전자상거래(쇼핑몰, 배달앱* 등)

  *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,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(만나서 결제)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.
- 유흥·사행업종(유흥주점, 카지노, 복권방 등)
- 환금성 업종(상품권 판매점, 귀금속 판매점 등)
- 조세·공공요금, 교통·통신요금 자동이체 등
- 보험업(생명보험, 손해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)